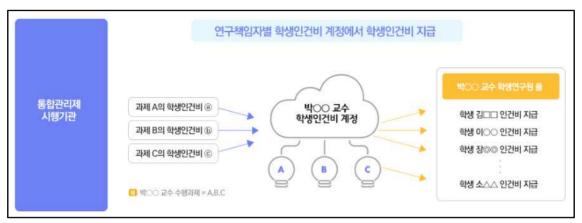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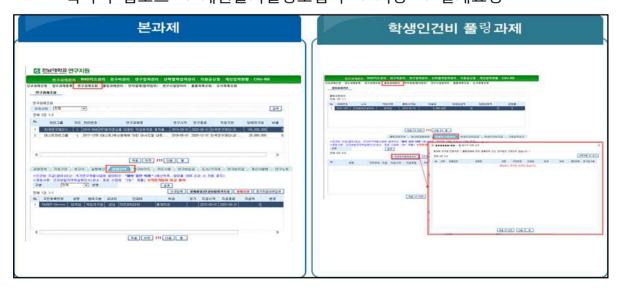
## ○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

- 1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란?
  - 가.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'13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함
  - 나.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집행하지 않고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적립 및 집행함



- \* 자료출처: 한국연구재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설명회 자료집 발췌
- 2. 학생인건비 사용 원칙 및 제한사항
  - 가.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한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관리 및 사용하며,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보고하고 정산을 면제
  - 나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.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등록하지 않음
    - ※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는 학생연구원별 총 참여율을 관리하여야 함
  - 다. 연구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참여율을 정하고 연구참여확 약서를 작성하며,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
    - ※ 연구참여확약서는 계정책임자·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, 학기(6개월) 또는 학년(12개월) 단위로 작성이 원칙임
  - 라. 학생인건비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이체 (1인 1계좌 원칙/ 매월 17일 학생인건비 지급)
  - 마. 타기관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해 인건비를 받는 학생연구원은 해당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를 최초지급 시기와 참여 종료 시기 두 번에 걸쳐 제출(외국인 학생의 경우 확인서로 대체 가능)하며, 참여율, 참여기간 변경 시점에 "연구참여확약서" 재제출

- 바. 수료생의 인건비는 연구생 등록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
- 사.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
- 아.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.12.31.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
- 자.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,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도 학생인건비를 집행
- 차. 학생인건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
- 카.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부담금 지급 가능
  - ※ 학사과정: 월100만원, 석사과정: 월180만원, 박사과정: 월250만원
- 3.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로드 방법
  - 가.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
    - 본과제 참여인력 등록 → 학생인건비 풀링과제에서 "학생연구원연동/ 처리" 선택 → 연구원 선택 후 선택적용 →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확약서 업로드 → 재원출처별정보입력 → 저장 → 결재요청



나. 학생인건비 관련 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시작, 종료), 연구참여 확약서) 업로드 방법



- 4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사항
  - 가. 학생인건비 유용비율이 2%를 초과하는 경우

제19조(지정취소) ① 1. 제18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

나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% 미만인 경우

제19조(지정취소) ① 2.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(학생인건비 수입총액(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) 대비 집행총액) 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

다.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**학생인건비를**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

(과제협약 및 연구비 입금 지연,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외부요인에 따라 소급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)